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나48122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나4812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가단1836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정성원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2. 4. 12.

판결선고 2022. 5. 17.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가단1836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439,39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 추가판단’을 기재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건설사의 ‘아파트에 천연온천수가 공급된다’는 광고에 기망당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건설사에 대한 사기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이 사건 구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G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공급되는 물에 관하여 다소의 과장된 광고를 한 것을 넘어서 온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온천수가 공급되는 것으로 수분양자인 피고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관형, 판사 이상아, 판사 조성필